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의안 번호	338
----------	-----

제출연월일 : 2005년 8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우리도의 핵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은 전액 출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유재산중 오창벤처임대공단(28필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4필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3필지)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
- 현금출자액 : 20,359,265천원
- 현물출자액 : 33,498,172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평가액(천원)
계	151	167,651	33,498,172
밀레니엄타운 부지	47	100,926	14,843,763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5	48,634	12,153,680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	6,500,729

※ 현물출자 자산평가 방법

- 밀레니엄타운 부지 : 토지수용시 보상금액
- 가경·중평지구 연부용지 : 미납액
-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 택지 : 금융기관 평가액 참고 결정

**3. 현물출자 세부내역 : 별첨1**

**4. 관계법령 : 별첨2**

<별첨2>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공기업법

#### ○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 지방재정법

#### ○ 제15조(출자의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제96조의2(현물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 제4조(출자가액)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의 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광업권·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규정이 없는 것은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있는 자의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평가를 참작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요청한 기일 내에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